



제339회 임시회  
2015. 4. 23.(목)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장선배 의원 등 7명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5년 4월 13일
- 회부일자 : 2015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 기금 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재 적립 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 가. 매년 이자의 10%이상 기금 재 적립 조항 삭제(안 제4조)
- 나.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 조항 문구 수정(안 제4조)
- 다. 기금 지급 대상 중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근로청소년’으로, ‘특별학습설치 학교의 장’을 ‘해당 학교의 장’으로 수정(안 제5, 6조)
- 라. ‘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수정(안 제6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육성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기금 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재 적립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한 것임.
-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은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 지원금, 평생교육시설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 구입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사용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되고 있음.
- 이자 재 적립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첫째, 기금의 설치·운영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단체위임 사무로 법리적인 문제가 없으며,  
둘째, 도민의 기금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의한 이자수익금 감소 문제의 해결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본 개정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에서 ‘근로청소년’으로 수정하고, 대상 추천권을 ‘야간특별학급 설치 학교장’에서 ‘근로청소년 해당 학교의 장’으로 수정한 것은, 교육부의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이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던 충청도 내 야간제 특별학급이 해소됨에 따른 것이며,
- ‘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수정한 것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의 명칭 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